

의 안 포 함	제2369호 ~ 제2371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2023. 5. 9.(화) 10:00
제3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

# 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3건(개정조례안2, 개정규칙안 1)



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 안광수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69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심민섭 부의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, 윤리심사 규정을 보완(안 제4조)
- 윤리강령 위반 시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(별표)

## 4. 법적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무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0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오원석 의원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기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인 [별표 1]을 삭제하고, 공무원 여비 규정의 [별표 2]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(안 제3조)

## 4. 법적근거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1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차상현 의원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## 4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372호 ~ 제2376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2023. 5. 10.(수) 10:00
제350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# 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5건(조례안 5)



행정자치위원회  
전문위원 백윤석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2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현 정부 국정과제인 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(23. 6. 28.)에 앞서 우리군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만 나이 포함 조문 및 별표 개정 : 7개 부서 소관 12개 조례

소관부서	조례명	개정대상
총무과	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7조제1항
문화관광과	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2조제4호/제7조제3호/별표4
주민복지과	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10조제1항
	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	별표
가족행복과	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	제3조제1항
	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6조제1호
	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	제2조제1호/별표
	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6조
	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2조제1호/별표2
보건정책과	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	제12조
체육사업소	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	별표2
평생교육센터	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제2호

## 4. 법적근거

-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에 앞서 우리군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3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「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('22. 1. 11.)하면서, 기존에 있던 「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중복으로 존재하여 폐지가 필요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 4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
## 5. 검토의견

- 「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면서, 기존에 있던 「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지 않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례가 중복으로 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4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교류·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책무(안 제1조~제3조)
  - ‘군장병’이란 상무대 내 「군인사법」 및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사람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
  - ‘거주 군인’이란 상무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
  - ‘군인 가족’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- 지원사업(안 제4조)
  -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
  -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
  -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, 환경개선(지역주민 편의·안전 관련시설에 한정)
  -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·관·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,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(안 제5조~제6조)
- 포상, 업무의 위탁, 준용, 시행규칙(안 제7조~제10조)

## 4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군부대와 협력하여 군장병 사기진작 및 상생발전과 교류·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5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('20. 10. 5.)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 폐지됨.

## 3. 주요내용

- 제2조(권한의 위임) 제3호 삭제
  -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

## 4. 법적근거

-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 2(주민등록번호의 부여)
-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7조(주민등록번호)
-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(주민등록번호의 부여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6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,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
  - 장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(제4조제3항)
  -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(제9조제4항)
  -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22조제2항, 제23조제4항)
- ※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같음,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함.
- 별지 서식 변경
  - 장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 서식)

-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(별지 제1호 서식)
-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~제5호)

#### **4. 법적근거**
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의 금지)
-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제1항

#### **5. 검토의견**

-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,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## **6. 첨부서류 : 생략**

의안 번호	제2377호~ 제2381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2023. 5. 11.(목) 10:00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
--

# 검 토 보 고 서

- 안건 : 5건(제정조례안 4, 전부개정조례안 1)



산업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안광수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7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고재진 의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 대상 규정(안 제4조)
  -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
  - 제외>타기관 지원, 화재보험금 수령, 빈집, 불법건축물, 경미한피해(10% 미만)
- 화재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(안 제5조)
  - 전소(70%이상)\_500만원, 반소(30%이상)\_300만원, 부분소(10%이상)\_200만원
- 화재피해지원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  - 피해주민 신청→읍면장 확인→지원여부 결정(군수)→통지(신청인·읍면장)
  - 피해자 사망 등 직접신청 불가능시 가족, 이·반장 대신 신청 가능
- 화재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규정(안 제8조)
  - 피해주민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,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령



## 4. 관련근거

- 「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 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8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최미화 의원)
- 의안철회 : 2023. 5. 10.

## 2. 제안이유

- 장성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  - 종합시책 수립,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근로환경 조성 노력
-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- 실시계획 수립, 수립시 필요한 기관·단체에 자료요청
-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 -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, 직업교육훈련, 인턴취업, 경력단절 예방 등
-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 -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

## 4. 관련근거

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취미화의원 외 1인의 발의자로부터 2023. 5. 10.(수) 의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에 따라 같은날 의안철회됨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79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의회의회장(김연수 의원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「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」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 -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복지시책 추진, 정책추진 전담팀 설치 노력
- 운영계획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  - 운영계획 매년 수립(도입~불법체류방지대책), 농협 등 위탁운영
- 지원사업 및 대상,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  - 산재보험료, 차량임차료, 교육비, 통·번역료, 부득이 중도 귀국시 항공료 등 지원
-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 - 주거 및 근로환경 등 고용실태 전반

## 4. 관련근거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- 「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「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」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80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실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
-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

## 3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 - 변경 전 :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  - 변경 후 :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내용 반영
  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  - 군수·군민의 책무(안 제3조)
  -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5조)
  - 위원회·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지원(안 제16조)
  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(안 제17조)
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18조)
-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(안 제19조)

#### **4. 관련법령**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3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9조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

#### **5. 검토의견**

- 본 조례안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의무 및 위원회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## **6. 첨부서류 : 생략**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81호
- 제출일자 : 2023. 4. 28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5. 1.

## 2. 제안이유

- 살기 좋고 쾌적한 장성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, 화재발생·붕괴 등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  -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계획의 수립·시행해야함
- 빈집 정비 지원(안 제7조)
  -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의 경우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, 지원기준·지원방법·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
    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
    - 2)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(공용주차장, 주민쉼터, 문화여가시설, 주민운동시설, 공용텃밭,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)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
    - 3)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

## ○ 빈집의 안전조치(안 제8조)

- 빈집으로 인한 붕괴·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보수·보강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
-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음
-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

## 4. 관련법령

### ○ 「농어촌정비법」(법률 제18755호)

- 제2조제12호(빈집 정의)
- 제64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), 제64조의2(빈집실태조사)
- 제65조의2(빈집에 대한 군수의 책무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살기 좋고 쾌적한 장성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, 화재발생·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 6. 첨부서류 : 생략